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30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60205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재단법인 A

[redacted]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redacted]

[redacted]

변 론 종 결 2019. 3. 7.

판 결 선 고 2019. 4.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 1. 4. 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30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redacted] [redacted]구 B 대 1,3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15. 7. 20. 임의경매를 통해 취득하였고, 학술연구단체 또는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이후 이 사건 토지는 2015. 12. 8. C 대 1,475㎡와 합병되었다.

나. 원고는 자산의 총액을 2015. 4. 22. 507억 원만큼, 2015. 12. 23. 12,244,644,994원만큼 각 증액(이하 '이 사건 증자'라 한다)한 후,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2항에 따른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으로서 중과세 예외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경 '원고의 법인결산서를 살펴보면 법인의 사업비용이 연구지원비로 대부분 배정·집행되어 장학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볼 수 없고, 연구비 지원 사업이 원고의 주된 사업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또한 2017. 12. 14. 원고에게 '원고는 학술연구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출이 장학사업비의 10~20배 수준에 이르러, 장학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30

로, 이 사건 증자는 중과세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아울러 원고가 학술연구단체나 장학단체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이 2017. 12.분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8. 1. 4.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학사업 및 학술연구지원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기부금으로 충당된 재원으로 장학금 지급 및 연구비를 지급하는 외에는 일체의 다른 사업활동이 없으므로, 원고는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해당하고, 아울러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 역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학술연구단체 또는 장학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거나 원고의 사업을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더구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5항 제1호가 법인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아닌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그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된 업종이 장학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만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30

로 등록면허세를 안분하지 않은 채 전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이 명백하다.

한편,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함께 부과되는 여러 종류의 가산세는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가산세 부분은 고지서상 그 세액 산출의 근거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절차상 고유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2. 4. 25.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2012. 5. 8. [redacted] [redacted]구 D을 주사무소 주소지로, 장학사업, 학술연구비 지원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후 2012. 7. 17. 100,000,000원(등기일 2012. 7. 23.), 2015. 3. 31. 50,700,000,000원(등기일 2015. 4. 22.), 2015. 12. 8. 12,244,644,944원(등기일 2015. 12. 23.), 2017. 4. 19. 4,020,336,660원(등기일 2017. 5. 19.)의 기본재산(자산 총액)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 등기를 하였다.

2) 원고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운영성과표 중 사업수익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소계
기부금수익	400,000,000	400,000,000	600,000,000	38,962,355,006		229,370,000,000	269,732,355,006
이자수익	12,719,110	16,828,286	15,954,073	465,671,721	83,347,744	21,724,683	616,245,617
임대수익				13,250,000	376,500,000	909,000,000	1,298,750,000
배당금수익					300,000,000	330,000,000	630,000,0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30

소계	412,719,110	416,828,286	615,954,073	39,441,276,727	759,847,744	230,630,724,683	272,277,350,623

3) 원고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운영성과표 중 사업비를 연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고, 그중 2015년도에 발생한 목적사업비 300억 원은 2015. 12. 4.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기본재산 편입예외 기부금 사용 승인'을 받아 신규 재단법인 E에 출연한 금액이다.

(단위: 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소계
연구지원비	202,500,000	367,486,034	656,634,000	934,011,292	686,956,802	641,650,277	3,489,238,405
장학사업비	20,000,000	20,000,000	30,000,000	50,000,000	50,000,000	250,000,000	420,000,000
연구지원 수행비용		11,702,702	30,674,411	8,867,883			51,244,996
목적사업비				30,000,000,000			30,000,000
소계	222,500,000	399,188,736	717,308,411	30,992,879,175	736,956,802	891,650,277	33,960,483,401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납세고지서의 하자 여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30

종류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납세고지서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제6호증의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1. 4.자 납세고지서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를 고지하면서, 과세표준액 4,444,040,000원과 함께 본세와 가산세를 구분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각각 고지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인 2017. 11.경 근거법령을 포함한 자세한 추징사유와 함께 각 세목별 본세의 종류와 세액, 취득세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각 과세표준,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연일자 등을 기재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위 과세예고통지서에 기재된 각 가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연일자를 비교해 각 가산세의 세율을 파악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을 함에 있어 어떠한 지장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의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와 관련한 일부 기재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30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보낸 위 과세예고통지에 의하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학술연구단체와 장학단체의 의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이하 각 조항을 합하여 '면제조항'이라 한다)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 ·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등록면허세에 관하여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에 관하여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6조 제1항 제26호에서 위 면제조항에 따른 학술연구단체 · 장학단체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은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에서 제외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제조항에서 정한 '학술연구단체'란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하고(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7515 판결 참조), '장학단체'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학자금 · 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 · 지원하거나, 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 · 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50037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기술진흥단체에 과학 및 산업기술을 연구 · 개발하는 것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30

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것도 목적 범위에 포함되는 것처럼, 학술연구단체 또한 그 목적 범위에 학술의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연구를 지원하는 것과 연구 그 자체를 수행하는 것은 쉽게 구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 및 학술을 '진흥'하는 단체와 '연구'하는 단체는 서로 그 성격과 목적 범위가 동일할 수는 없는 것[1]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학술연구비 지원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학술연구단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

어느 단체가 '학술연구단체' 또는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체의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설립근거인 법령, 정관의 목적사업, 주된 수행업무 등 실질적인 활동 내역, 예산집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115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500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목적사업으로 학술연구비 지원사업이 등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3,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학술연구비 지원사업을 학술연구사업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점, ② 학술 연구비 및 연구비 심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마련된 원고의 학술 연구비규정(갑 제13호증)에도 연구계획서를 제출받아 연구비를 신청하는 절차와 그 지급 및 관리절차에 관한 규정만 마련되어 있을 뿐 학술의 연구와 발표 그 자체를 위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원고의 연구지원비 지출 내역은 모두 다른 산학연구단체에 대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지원비 지출 내역에 해당할 뿐 실질적인 연구 활동을 위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1)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하여서 깊이 있게 조사하고 생각하여 진리를 따져 보는 일'을 뜻하는 연구(硏究)와 '떨치어 일어남'을 뜻하는 진흥(振興)의 사전적 의미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30

보면, 원고를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술연구단체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학술연구단체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더구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수익을 연구비와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목적이 임대수입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크다).

4) 장학단체 해당 여부 및 중과 세율 안분규정 적용 여부

장학사업이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단체는 위 조항에서 정한 '장학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50037 판결 참조). 한편 원고가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앞서 학술연구단체의 해당 여부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목적사업과 활동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그 판단이 되는 기준시점은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사용 또는 이 사건 증자 당시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장학사업 역시 원고의 목적사업으로 학술연구비 지원사업과 함께 등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원고의 연도별 사업비 지출액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의 연구지원비가 합계 28억 원 이상으로 상당한 반면, 장학사업비는 합계 1억 7,000만 원에 불과하여 원고의 장학사업비에 비하여 연구지원비가 압도적으로 많은바[2], 원고를 '장학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2015. 12.경 재단법인 E에 대한 300억 원의 출연행위

2) 2017년까지의 누적액을 보더라도 원고의 연구지원비는 약 35억 원에 이르는데 비해, 장학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에 불과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30

또한 장학사업 등이라는 원고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기부금 사용승인 신청에 대해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본재산 편입 예외를 승인한 사정은 기부목적 등을 고려한 결과일 뿐이고 원고의 목적사업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 제1호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그 대상 업종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한 등록면허세 중과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일부 장학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겸업하고 있다 보더라도, 원고의 장학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이라고 볼 수 있는 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규정에 따른 안분 비율을 구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이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장학단체이거나 장학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이 존재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양준

판사 박종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30

판사 추진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30

[별지 1]

목 록

1. 각 부과처분

(단위: 원)

구분	세목	본세	가산세	합계
취득세	취득세	355,523,200	106,621,400	462,144,600
	지방교육세	53,328,480	13,326,780	66,655,260
	농어촌특별세	8,888,080	2,221,130	11,109,210
등록면허세 (2015. 4. 22. 증자분)	등록면허세	202,800,000	80,207,400	283,007,400
	지방교육세	40,560,000	11,985,480	52,545,480
등록면허세 (2015. 12. 23. 증자분)	등록면허세	48,978,580	15,771,090	64,749,670
	지방교육세	9,795,720	2,174,650	11,970,370
재산세	재산세	347,540		347,540
	재산세 (도시지역분)	194,620		194,620
	지역자원시설세	139,120		139,120
	지방교육세	69,500		69,500
합계		720,624,840	232,307,930	952,932,770

2. 각 가산금 징수처분

(단위: 원)

구분	세목	가산금
등록면허세 (2015. 4. 22. 증자분)	등록면허세	15,282,380
	지방교육세	2,837,440
등록면허세 (2015. 12. 23. 증자분)	등록면허세	3,496,470
	지방교육세	646,390
합계		22,262,68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30

[별지 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80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80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

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
2. 행정자치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30

■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 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5.7.24>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 및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제44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법 제2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제45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30

⑤ 법 제28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2항 각 호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직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에서 제2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과 그 외의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가목 및 나목과 같이 산출한 후 그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른다.

1.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2.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3.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계산식>

가.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text{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 \frac{\text{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text{(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times 100$$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액 × 365일)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운영일수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액 × 365일)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운영일수

나.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text{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 100 - \text{해당 법인 중과대상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재산의 구분)

① 공익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끝.